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여튼이 비 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재정 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 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 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망치발(Hammer Toe)

“어름이 되면 Open toe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가락이 못생겨서 스트레스 받아요”

하이힐에 뾰족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발가락 윗면에 굳은살이 잔뜩 박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름이 되어 발을 내놓고 보면 남들은 굳은살이 없는 걸 보고 왜 나만 그럴까 싶다는 환자들이 있다. 흔히 Bunion(외반족,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흔한 병증인 망치발, 즉 Hammer Toe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 대개 ‘발이 못생겼다’고만 생각하다가 질환을 더욱 키우곤 한다. 하지만 이는 Podiatrist(족부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 망치발 수술 전(왼쪽)과 후의 모습. 사진=장원호 발 전문 병원

망치발은 발가락이 마치 움켜쥐는 듯한 모양으로 변형되면서 발가락 위쪽으로 Com(굳은살 혹은 티눈) 등을 동반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발가락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굽은 발가락을 통칭하여 망치발이라고 부르지만 발가락 안에 몇 개의 관절이 변형되었느냐에 따라 Mallet Toe(하나의 발가락 관절), Hammer Toe(두개 관절), Claw Toe(세 개 관절)로 상세히 나누기도 한다. 높고 뾰족한 구두를 즐겨 신는 여성층에 빈번히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다.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 없이 기인한 망치발의 경우 처음에는 대개 발과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작되며, 초기에는 손으로 굽은 발가락을 펼 수 있을 정도로 뼈나 관절의 변형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과 뼈의 변형이 시작되면서 발가락의 굽은 상태가 굳어지고 발가락과 앞발 전체의 관절이 뒤틀리며 관절염 및 통증도 심해진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요법과 수술적요법으로 나뉜다. 비수술적요법으로는 발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과 신발사

의의 압력과 마찰 등으로 생긴 굳은살이나 티눈을 제거하고 환부의 재발을 늦추는 Padding/Tapping 방법이다. 또한 Orthosis/Orthotics(의료용 교정 깔창) 등을 사용하면 보행 시 발과 다리의 균형을 맞추어 망치발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Orthopedic Shoes(정형외과적 신발) 등을 맞춤 제작하여 착용함으로써 환자의 바르고 편한 보행을 도와줄 수 있다. 수술적 요법의 경우 뼈와 관절의 변형이 없다면 굳은살이나 티눈으로 인한 통증 부위의 피부만 절제하면 되나, 뼈와 관절의 변형이 진행되었다면 Arthroplasty(관절 성형술) 혹은 Arthrodesis(관절 고정술)을 시행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Tendon Transfer(힘줄 전이술)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망치발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증 제거로 인한 만족감은 물론, 굳게 뻣은 굳은살 없는 아름다운 발과 발가락은 환자에게 더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준다. 하지만 항상 예방이 우선이다. 앞이 좁은 신발이나 보행 때 환부에 자극을 주는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고, 발 건강에 좋은 신발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